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87호

도시관리계획(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0호(2006.4.2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13-14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17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2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도봉구 방학동 713-14번지 전면에 주차출입구 1개소를 신설함으로써, 이면도로 미개설로 불가하였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기 정	변경	변경후	
기 정	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	방학동 720 일대	259,250	-	259,250	1997.7.28.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대지내 공지 및 통로 : 변경없음
 - 나.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계 획 내 용
기 정	차량출입 불허구간	○ 차량의 출입 불허
	주차출입구	○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(5개소)

구 분		계 획 내 용
변 경	차량출입 불허구간	○ 차량의 출입 불허 (방학동713-14 차량출입(6m) 추가 허용)
	주차출입구	○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(6개소) - 방학동 713-14 전면에 주차출입구(6m) 신설

※ 금회 신설되는 방학동 713-14 전면 주차출입구는 후면 이면도로(소로3-2) 개설시까지 설치·사용토록 조건부 허용
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III.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

- 방학동 713-14 전면에 신설되는 주차출입구는 이면도로(소로3-2) 개설시까지 설치·사용토록 조건부 허용

IV. 관계도면 : 불임참조 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89) 및 도봉구 도시계획과(☎02-2091-3564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